

# 05 안전·건설 분야

1.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시행(신규)
2.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3. 주민대피 긴급구호물품 지원
4. 자연재난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5. 풍수해보험 지원기준 상향
6.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신규)
7. 중개보조원 신분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8. 주거급여 지원
9.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신규)
10. 산 이름 등 지명 부여 절차 간소화

## 안전·건설 분야

신규

진도군

## 1 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시행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주택 복구 및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 주요내용 :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주택 복구비 및 임시거처비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화재 피해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 주택 화재 발생 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주택 복구비(주택전소 3백만원 이하, 주택반소 2백만원 이하, 주택부분소 1백만원 이하) 및 임시거처비(2백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원합니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임시거처 지원금은 임차기간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제외 : 타법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보험금·보상금 지급받은 경우 등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화재피해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합니다.

문의 안전생활지원과 안전정책팀(☎061-540-6864)

## 안전·건설 분야

### 2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강화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 '24. 1. 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상 명시된 소규모사업장 법 적용 유예기간('24.1.26) 종료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규모 >

종 전	변 경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시행일 2024년 1월 27일

####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 법에서 부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시민과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한 법률입니다.
-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해야 함. 또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및 그 밖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안전생활지원과 중대재해팀(☎061-540-6873)

## 안전·건설 분야

### 3 주민대피 긴급구호물품 지원

재해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한 주민 편의를 위해 「긴급구호물품」이 지급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증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호물품 지원</li> </ul>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시 대피한 주민에게 제공	모든 재난 발생 시 대피한 주민에게 제공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긴급구호물품이란 무엇인가요?
  - 선제적 주민대피가 필요한 재해(산사태, 홍수, 붕괴 등) 발생 시, 긴급대피 주민에게 지급되는 물품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대피 기간동안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산사태, 홍수, 붕괴 등 발생으로 재해 위기 경보 발령 시, 대피한 주민에게 지원합니다.
-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요?
  - 재해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대피한 경우, 대피 장소별로 지급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긴급대피 주민의 고통 경감과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지원합니다.

문의 건설과 자연재난팀(☎061-540-3490)

## 안전·건설 분야

### 4 자연재난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자연재난 피해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상향 확대됩니다.

\* 인명 및 주택피해 시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평균 1.5배 이상 상향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인명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실종 (재난지원금) 20백만원 (구 호 금) 10백만원</li> <li>• 부상 1~7급 (재난지원금) 10백만원 (구 호 금) 5백만원</li> <li>• 부상 8~14급 (재난지원금) 5백만원 (구 호 금) 2.5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실종 (재난지원금) 20백만원 (구 호 금) 20백만원</li> <li>• 부상 1~7급 (재난지원금) 10백만원 (구 호 금) 10백만원</li> <li>• 부상 8~14급 (재난지원금) 5백만원 (구 호 금) 5백만원</li> </ul>
• 주택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별 동일 지급</li> <li>• 전파: 16백만원</li> <li>• 반파: 8백만원</li> <li>• 침수: 2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별 차등 지급</li> <li>• 전파: 20 ~ 36백만원</li> <li>• 반파: 10 ~ 18백만원</li> <li>• 침수: 3백만원</li> </ul>
• 상가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수: 2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수: 3백만원</li> </ul>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무엇을 준비하여 신청하나요?
  -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피해 신고 접수는 주소지와 피해발생지 중 어느 지자체에서 접수하나요?
  - 피해발생 시·군 소재의 관할 읍·면사무소 혹은 인터넷 접수합니다.
- 기존에 가입한 정책보험과 중복수령이 가능한가요?
  -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중복혜택 불가능합니다.
    - ※ 법령 상 운영되는 보험상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의거 중복 불가
  - (도민안전보험) 중복혜택 가능합니다.
    - ※ 조례 상 운영되는 보험상품이므로, 중복 지급 가능

문의 건설과 자연재난팀(☎061-540-3490)

## 안전·건설 분야

### 5 풍수해보험 지원기준 상향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재난지원금 대비 주택 침수피해 보상혜택이 상향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장항목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침수 피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 이하: 400만원</li> <li>50㎡ 초과: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 이하: 600만원</li> <li>50㎡ 초과: 262.5만원+(6.75만원×주택면적) ※ 면적당 단가 1.5배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파손 피해 ※ 주택 면적 50㎡, 90%보상형 가입기준</li> </ul>	(단위 : 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보험 가입자</th> </tr> <tr> <th>주택 전파</th> <th>주택 반파</th> </tr> </thead> <tbody> <tr> <td>66㎡미만</td> <td>4,500</td> <td>2,250</td> </tr> <tr> <td>66~82㎡미만</td> <td>5,900</td> <td>2,950</td> </tr> <tr> <td>82~98㎡미만</td> <td>7,300</td> <td>3,650</td> </tr> <tr> <td>98~114㎡미만</td> <td>8,800</td> <td>4,400</td> </tr> <tr> <td>114㎡이상</td> <td>10,200</td> <td>5,100</td> </tr> </tbody> </table>		구분	보험 가입자		주택 전파	주택 반파	66㎡미만	4,500	2,250	66~82㎡미만	5,900	2,950	82~98㎡미만	7,300	3,650	98~114㎡미만	8,800	4,400	114㎡이상	10,200	5,100
구분	보험 가입자																					
	주택 전파	주택 반파																				
66㎡미만	4,500	2,250																				
66~82㎡미만	5,900	2,950																				
82~98㎡미만	7,300	3,650																				
98~114㎡미만	8,800	4,400																				
114㎡이상	10,200	5,100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보험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 연중 가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재난에 대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재난 대응기간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기부담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 8~30%의 규모로 지역 및 시설별로 차이가 있으며, 경제취약계층(기초·차상위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기부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 ※ 단,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 전부지원
-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기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정부지원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문의 건설과 자연재난팀(☎061-540-3490)

## 안전·건설 분야


 신규

### 6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도모
- 핵심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사할 경우 이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 지원(100만원 한도, 1회)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피해자등 포함)\*로 결정된 사람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 4항
    - ②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진도군내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100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인 : 전세사기 피해자(등) 본인
  - 신청장소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 구비서류 : 신청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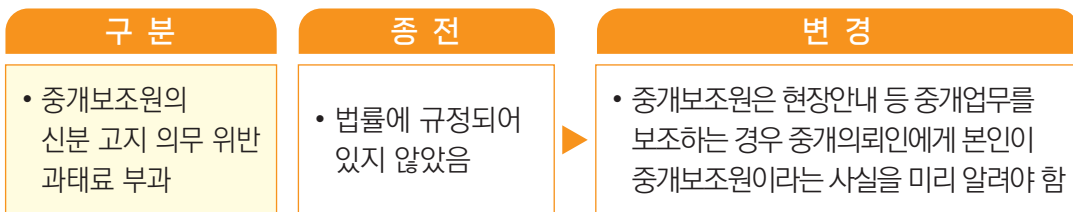
문의 민원봉사과 건축팀(☎061-540-3670)

## 안전·건설 분야

### 7 중개보조원 신분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고객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2023년 10월19일

####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중개보조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 중개보조원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www.ns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최근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계약을 진행하는 불법중개행위가 발생하여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나요?**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540-3643)



## 안전·건설 분야

### 8 주거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자를 확대하여 군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증전	변경
• 중위소득 기준 상향으로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47%	• 중위소득 48%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주거급여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비를 보조합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임차급여지급 :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보조
  - 수선유지급여 지급 : 자가 가구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비 보조
- 소득기준 및 2024년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 2024년, 단위: 천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2,228	3,682	4,714	5,729	6,695
주거급여	1,069	1,767	2,263	2,750	3,213
임대료 지원(천원)	178	201	239	278	287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도시개발과 주거환경팀 ☎061-540-3872

## 안전·건설 분야

신규

## 9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농지법 시행 이전('73년)에 형질변경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 지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지적공부상 농지인 토지에 주택 등을 지어 장기간 사용 중이나, 농지법 시행('73. 1. 1.)으로 지목변경(전·답→대지)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군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군) 과거 항공사진 비교 및 현지조사 후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 (소유자) 지목변경 신청서 제출
- (시·군) 지적공부(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정리 및 등기부 등본변경 신청 대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형질변경된 토지란 무엇인가요?**
  - 토지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거용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현실에 맞게 토지의 사용용도대로 지목 변경을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지법 시행 이전 농지에 주택, 창고 등을 지어 생활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토지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도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도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 민원봉사과 지적팀(☎061-540-3632)

## 안전·건설 분야

# 10 산 이름 등 지명 부여 절차 간소화

지도, 문헌 등에 사용하는 우리 지역 지명 결정 권한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어 좀 더 쉽고 빠르게 추진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증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명의 결정 권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명위원회 (시군 → 도 → 국가) * 2년 이상 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지명위원회 (군 → 도), 국가(고시) * 6개월 이내 처리</li> </ul>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지명은 무엇인가요?**
  - 자연·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형, 지물 등에 부여된 이름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주민 생활상, 유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명 종류는 어떻게 있나요?**
  - 산(山), 섬(島), 호수(湖) 등 자연자원에 부여된 지명과 교량, 터널, 저수지, 공원 등 인공 시설물에 대하여 지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 **지명 부여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 누구든 지명 부여를 신청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군과 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국가에서 고시합니다.
- **우리 지역의 지명을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나요?**
  - 현재는 국토정보 플랫폼(<https://map.ngi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전라남도 공간정보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문의 민원봉사과 지적팀(☎061-540-3632)